|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州) 규제 기관** | **자선단체 등록 및 허가 요건** | **보고기한 및 의무사항** | **통합등록신고서 인정 여부4** | **자선단체의후원(모금)요청 시 공시 의무** | **유급 후원 요청가 활용 시 추가적 후원요청 정보 공시 의무1** | **자문가(기관)의 등록/허가/기탁 요건2**  | **후원요청가에 대한 추가 의무 부과 여부3**  |
| **알라바마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소비자보호부(Consumer Affairs Section)주소: 501 Washington AvenueMontgomery, AL 36130334-242-7335800-392-5658 | 매해 등록, 수수료 $25 | 등록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나, 재무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90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함. 현재 회계연도의 재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난 년도의 재무를 제출해야 함, 수수료 $25 | **√** | 없음 | **√** | 등록, 수수료 $100, 기탁금 $10,000, 캠페인 보고기한: 계약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 |
| **알라스카 주**법무부(Department of Law)주 법무장관 청(Attorney General’s Offi ce)공정관행실천부(Fair Business Practices Section)주소: 1031 W. 4th Avenue, Suite 200Anchorage, AK 99501907-269-5100 | 매해 등록, 수수료 $40 | 매년 9월 1일에 등록이 만기됨, 수수료 $40 |  | 없음 | **√** | 없음 | **√** |
| **아리조나 주**주무장관 청(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비즈니스 서비스부(Business Services Division)주소: 1700 W Washington St., Fl 7Phoenix AZ 85007-2808602-542-6187 | 2013년 9월 13일부터 아리조나주는 더 이상 자선단체나 펀드레이저(기금조성가)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 없음 |  | 없음 |  | 없음 |  |
| **아르캔자스 주**주 법무장관 청(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소비자보호부(Consumer Protection Division)주소: 323 Center Street, Ste. 200Little Rock, AR 72201501-682-2341 | 매해 등록 | Annual Financial Reporting Form(연간 재무보고서) 제출기한: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종료 후 41/2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5월 15일까지. 요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최초 등록 시 제출한 정보들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업데이트된 Charitable Organization Registration Form(자선 기관 등록서)를 제출해야 함. 총수입이 $500,000 이상일 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audit)가 요구됨.  | **√** | 없음 | **√** | 등록, 수수료 $100. 기탁금 없음.  | **√** |
| **캘리포니아 주**자선신탁 등록소(Registry of Charitable Trusts)주소: PO Box 903447Sacramento, CA 94203-4470916-445-2021 | 최초 등록-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들, 수수료 $25200개 이상의 도시와 자치주(counties)에 서 모금규정을 통해 등록을 요구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Registry of Charitable Trusts(자선신탁 등록소)로 연락바람.  | Form RRF-1의 제출기한: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1/2개월 까지. 수수료: 총수입 규모에 따라 $25~$300사이. Form 990(비영리단체 표준 재무신고서)의 제출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41/2개월 까지. 총수입이 $2,000,000이상일 경우, 회계감사 받은 재무제표가 요구됨.  | **√** | 없음 | **√** | 등록, 수수료$350. Contract Notice Form(계약 통지서) 제출 요함. | **√** |
| **콜로라도 주**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주소: 1700 Broadway, Ste. 200Denver, CO 80290303-894-2200 | 매해 등록, 수수료 $10, 온라인으로 등록. 외국법인도 등록가능  | 등록 갱신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41/2개월 까지.  |  | 없음 | **√** | 기부금 관리권을 갖고 있을 시에만 등록 요함. 수수료 $175. 기탁금 없음. | **√** |
| **코네티컷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주소: 450 Columbus BoulevardSuite 801Hartford, CT 06103(860) 713-6000 | 매해 등록, 수수료 $50 | 연간 재무 보고서제출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11달 이내, 정부 보조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총수입이 $500,000을 넘을 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요구됨. 연체수수료: 1달에 $25 | **√** | 없음 | **√** | 기부금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엔 등록 및 기탁금을 요하지 않음. 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소비자보호부서)에 자선기관과의 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수수료$120와 기탁금 $20,000가 부과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델라웨어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주소: Carvel State Building820 North French StreetWilmington, DE 19801302-577-8600 | 없음 | 없음 |  | 없음 | **√** | 없음 |  |
| **컬럼비아 특별구**소비자 및 규제업무부(Department of Consumer &Regulatory Affairs)주소: 1100 4th Street, SWWashington DC 20024 202-442-4311 | Basic Business License(기본 사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최초 수수료 $412.50. 외국법인들은 인가증명서와 세금면제증명서를 취득해야 함 | 반년마다 갱신. 신고 수수료 $412.50. | **√** | 없음 | **√** | 없음 |  |
| **플로리다 주**농업 소비자부(Department of Agricultureand Consumer Services)소비자 서비스부(Division ofConsumer Services)주소: Terry Lee Rhodes Building2005 Apalachee ParkwayTallahassee, FL 32399-6500850-410-3800 | 매해 등록, 수수료: 연간 총수입에 따라 $10~$400사이.  | 매년, 등록과 함께 재무보고서 또는 Form 990 제출. 연체 수수료: 한 달에 $25총수입이 $500,000~$1,000,000사이일 시, 감사(audit) 또는 검토(review)받은 회계보고서. $1,000,000 이상일 시 감사받은 회계보고서. |  | 모든 서면 요청서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돼야 함: “공식등록된 바와 재무정보의 복사본은 무료전화 800-HELP-FLA 또는 [www.800helpfla.com](http://www.800helpfla.com)을 통해 Division of Consumer Services(소비자 서비스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사실이 단체에 대한 주의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플로리다 등록 #-----.” | **√** | 등록, 수수료$300. 기탁금 없음 | **√** |
| **조지아 주**조지아 자선부(Georgia Charities Division)주소: 2 MLK Jr. Dr. S.E., Suite 313West TowerAtlanta, GA 30334478-207-2440 | 최초 등록, 수수료 $35 | 지난 2년간의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포함하는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기관의 등록 갱신일, 수수료 $20. 수익금이 $1,000,000 이상일 시 감사필(Certified) 재무제표가 요구됨. 수익금이$500,000~$1,000,000사이일 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검토(review)가 요구됨. 수익금이 $500,000 미만일 시,Form 990 제출. 연체 수수료 $25 | **√** | 기관은 기부자에게 후원요청가 및 기관명을 공시해야 함. 전화 후원요청 시, 상대방이 요청하면 전화 거는 이의 위치, 자선프로그램,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야 함.  | **√** | 없음 | **√** |
| **하와이 주** 주 법무장관 부(Dept. of Attorney General)세무부(Tax Division)주소: 425 Queen St.Honolulu, HI 96813808-586-1480 | 매해 등록. 수수료 $10~$600사이. 온라인 등록. | Form 990 제출 기한까지 연간 재무보고서도 제출. 총 기부금이 $500,000 초과일 시, 감사가 요구됨.  |  | 없음 |  | 등록, 수수료$250, 기탁금 없음, 온라인 등록.  | **√** |
| **아이다호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주소: 700 W. Jefferson StreetPO Box 83720Boise, ID 83720208-334-2400 | 없음 | 없음 |  | 없음 |  | 없음 |  |
| **일리노이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자선 신탁부(Charitable Trusts Bureau)주소: 100 W. Randolph, 11th FloorChicago, IL 60601-3175312-814-2595 | 최초 등록, 수수료 $15 | 연간 재무보고서 기한: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 수수료 $15. 수입이 $300,000를 초과하거나, 전문 후원요청가가 활용됐고 기부금이 $25,000를 초과한 경우 공인회계사의 의견이 반드시 동반돼야 함. 등록 연체수수료 $200, 연간 재무보고서 연체 수수료 $100 | **√** | 없음 |  | 2년마다 등록. 수수료 없음. | **√** |
| **인디아나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소비자 보호부(Consumer Protection Division)주소: Indiana Government Center South302 W. Washington Street5th FloorIndianapolis, IN 46204-2770317-232-6201800-382-5516 | 없음 | 없음 |  | 없음 | **√** | 최초 등록, 수수료 $1,000.캠페인 이전에 신고 요함. 등록 갱신 수수료 $50. 계약 신고를 동반한 State Disclosure Form(주 공시서)가 요구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이오와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소비자 보호부(Consumer Protection Division)주소: 1305 E. WalnutHoover State Office Building2nd FloorDes Moines, IA 50319515-281-5926 | 없음 | 없음 |  | 요청 시, 자선단체의 재정정보가 제공돼야 함. | **√** | 없음 | **√** |
| **캔자스 주**캔자스 주무장관(Kansas Secretary of State)주소: First Floor, Memorial Hall120 SW 10th AvenueTopeka, KS 66612-1594785-296-4564 | 매해 등록, 수수료 $35 | 재무보고서 제출기한: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 $500,000 이상 모금됐을 시, 회계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 | 주무장관에게 재정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자선단체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 등록번호가 제공돼야 함.  | **√** | 등록, 수수료$25, 기탁금 없음, Contract Notice Form(계약 통지서)가 요구됨.  | **√** |
| **캔터키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소비자 보호부(Division of ConsumerProtection)주소: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1024 Capital Center Drive, Suite 200Frankfort, KY 40601-8204502-696-5389 | 최초 등록, 수수료 없음. 등록서류는 전자 제출(PDF형식, CD제출) | From 990의 제출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41/2개월이내. 등록 서류는 전자제출(PDF형식, CD제출) | **√** | 없음 | **√** | 등록, 수수료$50, 기탁금 없음, Contract Notice Form(계약 통지서)가 요구됨. | **√** |
| **루이지아나 주**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소비자 보호부(Consumer Protection Section)주소: 1885 North 3rd Street, 4th FloorBaton Rouge, LA 70802225-326-6463 | 전문 후원요청가를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캠페인 이전에 등록. 수수료 $25. | 매년 10월 1일까지 갱신, 수수료 $25. 업데이트된 Unified Registration Statement(통합 등록신고서) 제출. Form 990 요구됨.  | **√** | 이 주는 경찰과 소방관 단체에 높은 수준의 공시 의무를 부여함. 자세한 사항은 법령을 참고 바람.  | **√** | 없음 | **√** |
| **메인 주**자선 요청(Charitable Solicitations)전문 금융 규제부(Department of Professional& Financial Regulation)주소: 35 State House StationAugusta, ME 04333-0035207-624-8624 | 최초 등록, 수수료 $50 | 11월 30일까지 매해 갱신. 갱신신고 수수료 $25, 신고 연체수수료 $50. 추가적인 모금조성 보고서는 갱신일 이전까지 제출.  | **√** | 없음 |  | 없음 | **√** |
| **메릴랜드 주**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자선부(Charities Division)주소: State HouseAnnapolis, MD 21401410-974-5534 | 매해 등록, 수수료: 연간 총수익에 따라 $50~$300사이. 수익이 $25,000 미만이고 전문 후원요청가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엔 수수료 없음.  | Form 990 제출기한: 최근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 기부금이 $300,000 이상 $750,000미만일 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재무검토(review) 복사본이 요구됨. 기부금이 $750,000이상일 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audit) 복사본이 요구됨. 제출 연체수수료: 매달 $25 | **√** | 서면요청 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함.”’메릴랜드 자선 단체 법 아래 제출된 서류와 정보들은 주무부장관으로 부터 받아볼 수 있음(배송비와 복사비를 지불해야 함)’ | **√** | 등록, 수수료$250, 기탁금 없음 | **√** |
| **메사추세츠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공공자선부(Division of Public Charities)주소: One Ashburton Place,Boston, MA 02108617-727-2200 | 최초 등록, 수수료$100. 보충 서류와 수수료: 최근 회계연도의 총 수익에 따라 $35~$2,000사이. | $500,000 이상을 받는 기관들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총수입이 $200,000~$500,000사이인 경우, 회계사의 검토가 요구됨. Form PC 와 Form 990 제출 41/2 | **√** | 없음 |  | 등록, 수수료$400, 기탁금 없음 |  |
| **미시간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자선 신탁부(Charitable Trust Section)주소: PO Box 30214Lansing, MI 48909517-373-1152 | 최초 등록, 수수료 없음 | 매해 갱신 기한: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 기부금이 $275,000 이상일 시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는 검토가 요구됨. 기부금이 $525,000 이상일 시,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요구됨. | **√** | 주 법무장관은 모든 후원요청에 자선단체 등록 번호를 공개/공시할 것을 장려함. 미시간 법령에 뒷받침 되진 않음.  | **√** | 허가(Licensing), 기탁금 $10,000  | **√** |
| **미네소타 주**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자선부(Charities Division) 주소: 1200 Bremer Tower445 Minnesota StreetSt. Paul, MN 55101-2130651-296-3353 | 최초 등록, 수수료 $25 | 매해 갱신 기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15일 이내. 연간 보고서와 Form 990 복사본. 총수입이 $750,000 초과일 시, 감사가 요구됨. 제출 연체수수료 $50  | **√** | 없음 | **√** | 등록, 수수료$200, 기탁금 없음, 연체 수수료 $300 | **√** |
| **미시시피****주**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자선부서(Charity Division) 주소: PO Box 136 Jackson, MS 39205-0136 601-359-1350  | 2016년 1월 1일 기준, 모든 등록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http://www.so.ms.gov/ | 갱신(연장)을 포함한 재무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41/2개월까지 제출. 수익금이 $500,000을 상회하거나 전문 기금조성가를 활용한 경우,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 수익금(revenue)이 $250,000에서 $500,000 사이인 경우 회계사가 검토. | **√** | 서면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당 조직의 공식 등록과 재정 정보는 888-236-6167에 전화하여 미시시피 주무장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주무장관에 의한 등록이 해당 조직에 대한 주무장관의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 등록, 수수료 $250. 기탁금 없음.  | **√** |
| **미소유리 주**주무장관(Attorney General) 공공안전부서(Public Protection Unit) 주소: PO Box 899Jefferson City, MO 65102 573-751-3321 | 최초 등록, 수수료 $15. 501(c)(3)의 단체들은 등록 면제됨. 면제 취득을 위해 해당 단체는 IRS 세금 면제 결정문 사본 1부를 주(州)에 제출해야 함. |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21/2 개월 안에 연간보고서 제출. | **√** | 없음 | **√** | 없음 | **√** |
| **몬타나 주**주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주소: 215 N Sanders, Third Floor PO Box 201401 Helena, MT 59620-1401406-444-2026 | 없음 | 없음 |  | 없음 |  | 없음 |  |
| **네브레스카 주**주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소비자보호부서(Consumer Protection Division)주소: 2115 State Capital Bldg. Lincoln, NE 68509402-471-2682 | 없음 | 없음 |  | 없음 |  | 없음 |  |
| **네바다 주**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주소: 202 North Carson Street Carson City, NV 89710-4201775-684-5708 | 매해 등록. 등록 수수료 없음. 최초 신고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후 등록 만료됨. | 기한까지 연간재무보고서 제출. IRS Form 990(비영리단체표준재무신고서) 또는 유사한 정보를 담은 것을 매년 제출해야 함. |  | 서면요청서에는 해당 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설립형태(state of formation)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기부자들에게 기부금 세금공제 여부에 관해 알려야 함.  | **√** | 없음 |  |
| **뉴 험프셔 주**주무장관(Attorney General)자선신탁등록소(Register of Charitable Trusts)주소: 33 Capitol Street Concord, NH 03301-6397 603-271-3591 | 1회 등록, 등록수수료 $25. |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41/2 개월 안에 연간보고서와 Form 990 제출. 연간 보고 비용 $75. | **√** | 없음 | **√** | 등록, 수수료 $150. 기탁금 없음.  | **√** |
| **뉴저지 주**소비자분쟁부서(Division of Consumer Affairs)자선단체등록과(Charities Registration Section)주소: 124 Halsey Street, 7th floor PO Box 45021Newark, NJ 07101973-504-6215 | 최초 등록. 등록수수료: 총 기부금 액수에 따라 $30~$250 사이.  |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간재무보고 제출. 기한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 연체수수료 $25. 총 수익금이 $500,000를 초과할 경우, 감사 받은 재무제표 제출.  | **√** | 자선단체, 외부 유급 기금조성가 또는 후원요청가로부터 발행된 후원요청서, 확인서면(written confirmations), 영수증(receipts) 또는 서면독촉장(written reminders)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당 후원요청서와 관련한 정보 및 가장 최근 보고 기간에 해당 단체가 기부금 비율과 관련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한 정보는 전화(201-504-6215)와 인터넷([www.state.nj.us/lps/ca/charfrm.htm](http://www.state.nj.us/lps/ca/charfrm.htm))을 통해 뉴저지주의 주법무장관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법무장관에게 한 등록이 해당 단체에 대한 주(州)의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 등록수수료 $250. 기탁금 없음. 수수료$30와 주(州)계약신고서(state contract filing form)는 제출된 모든 계약서에 수반되어야 함. 캠페인 보고서 또한 계약 만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년간 진행된 캠페인의 경우, 자선단체의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수수료 $10.  | **√** |
| **뉴 멕시코 주**주법무장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자선단체등록(Charitable Organization Registry) 주소: 201 Third Street NW, Ste. 300 Albuquerque, NM 87102505-717-3500 | 매해 온라인 등록. 등록수수료 없음. | Form 990 또는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총 수입이 $500,000를 초과할 경우,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 연체수수료 $100. 모든 등록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되어야 함.  | **√** | 없음 | **√** | 없음 | **√** |
| **뉴욕 주**기금조성자문가와 전문 기금조성가(유급후원요청가) 지원부서(For funding Counsel and Professional Fund Raisers(Paid Solicitors)): State of New York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Charities Bureau Albany, NY 12224518-776-2160자선단체의경우(For Charitable Organisations): 법무부(Department of Law)자선단체등록부서(Charities BureauRegistration Section)120 Broadway, 3rd Floor New York, NY 10271212-416-8401  | 최초 등록, 수수료 $25  | 연간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1/2 개월 안에 제출.  | **√** | 요청서에는 볼드체 10포인트 또는 문서에서 주로 사용된 글자보다 작지 않은 크기로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가장 최근에 발간된 연간보고서 사본 1부는 해당 단체나 법무과 자선부서(the Charities Bureau, Department of Law 120 Broadway, New York, NY 10271)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 등록, 수수수료 $800. 기탁금 없음. 계약 증명서(Contract Certification Form) 제출 요구됨.  | **√** |
| **노스캐롤라이나 주**주무장관실(Department of Secretary of State) 주소: 2 Sailsbury Street, Suite 5014 Raleigh, NC 27601 Or 주소: PO Box 29622Raleigh, NC 27626-0622919-807-2214 | 매해 등록, 수수료: 모금액에 따라 $50~$200 사이. 모(母)단체가 지부나 계열기관을 대표하여 제출함: 지부 개수에 따라 수수료는 $100에서 $400사이로 책정됨.  | 매해 갱신은 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41/2 개월 안에 가능. Form 990 제출; 감사 받은 재무제표 제출은 선택사항. 연체수수료: 매달 $25.  | **√** | 자선 단체 또는 후원 업체는 등록 해야 하며, 모든 후원요청서(solicitation), 확인서면(written confirmation), 영수증(receipt) 또는 서면독촉장(reminder)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당 단체의 재무 정보와 허가증의 사본은 888-830-4989에 전화하여 주(州) 후원 요청 허가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허가증이 해당 단체에 대한 주(州)의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이 내용은 글자크기 9포인트로 인쇄되어야 하며 밑줄, 경계선, 굵기 등을 활용하여 명백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 | 주(州)의 기금조성자문계약 체크리스트(Fundraising Consultant Contract Checklis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허가(Licensing): 수수료 $200. 기탁금 없음. | **√** |
| **노스다코다 주**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허가부서(Licensing Division)주소: 600 E. Boulevard AvenueDept. 108Bismark, ND 58505701-328-3665 | 최초등록. 수수료 $25, 외국법인 등록가능  | 연간보고서는 매년 9월 1일까지 제출. 수수료 $10.  | **√** | 없음 |  | 등록 수수료 $100. 기탁금 $20,000. 외국법인 등록가능 | **√** |
| **오하이오 주**주법무장관(Attorney General)자선재단과(Charitable Foundation Section)주소: 150 E. Gay Street, 23rd Floor Columbus, OH 43215-3130 614-466-3180 | 주(州) 외부의 자선단체나 오하이오 주 신탁법(Trust Act) 하에 등록되지 않은 오하이오주의 단체들은 매해 등록. 주(州) 안에서 획득한 모금액 양에 따라 수수료는 $50~$200 사이. 등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되어야 함.  | 매해 등록은 회계연도종료로부터 41/2개월안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함. 연체수수료 $200.  | **√** | 자선단체의 단체명과 주소. 501(c)(3)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닐 경우, 요청의 자선적 목적을 명시할 것. | **√** | 단체가 기부금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등록.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수수료 $200 및 기탁금 $25,000.  | **√** |
| **오클라호마 주**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사업신고부서(Business Filing Department)주소: 421 N.W. 13th, Suite 210 Oklahoma City OK 73103 405-522-2520 | 매해 등록, 기부금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수수료 $65. 기부금이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록수수료 $15. | 매해 등록 요구됨.  | **√** | 없음 |  | 없음 | **√** |
| **오레곤 주**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자선활동과 (Charitable Activities Section)주소: Oregon Department of Justice 100 SW Market Street Portland, OR 97201-5702971-673-1880 | 최초 등록, 수수료 없음.  | 연간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41/2개월 안에 제출. 수수료: $20~$400 사이. 감사 받은 자료가 준비돼있는 경우엔 제출 요함. 연체수수료 $20. | **√** | 없음 | **√** | 직접 메일로 자문하는 자문가/단체이거나 기부금에 접근 가능한 단체, 혹은 비용지불의 권한이 있는 단체인 경우 등록이 필요함. 수수료 $250. 기탁금 없음.  | **√** |
| **펜실베니아 주**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자선단체부서(Bureau of Charitable Organizations)주소: 207 N. Office Building Harrisburg, PA 17120 717-783-1720 | 매해 등록, 수수료: $15~$250사이.  | 주(州)는 자동으로 180일의 기간연장을 승인함. 연간 재무제표와 Form 990을 제출할 것.  | **√** | 후원요청 공표:”[주에 등록된 단체의 법적 성명]의 공식적인 등록과 재정 정보는 펜실베니아 내 수신자부담전화 800-732-0999를 통하여 펜실베니아 국무부(Pennsylvania Department of State)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해당 단체에 대한 주(州)의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 등록, 수수료 $250. 기탁금 없음. | **√** |
| **로드 아일랜드 주**사업규제부서(Dept. of Business Regulation)자선단체과(Charitable Organization)주소: 1511 Pontiac Avenue Building 69 Cranston, RI 02920401-462-9588 | 매해 등록, 등록수수료 $90. 모든 문서는 CD-ROM으로 제출하거나 <http://elicensing.ri.gov>.에 온라인으로 제출. | 매해 갱신.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 받은 재무보고서 매년 제출. 수익금이 $500,000 미만인 곳은 필수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예산이 $500,000 미만일 경우 주(州)는 감사요구권을 가짐.  | **√** | 없음 | **√** | 등록, 수수료 $240. 기탁금 없음. 등록을 위한 문서는 CD-ROM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것, 계약서는 이메일을 통해 주(州)에 제출할 수 있음.  | **√** |
|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주무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주소: 1205 Pendleton Street Suite 525 Columbia SC 29201803-734-1790 | 매해 등록, 수수료 $50. | 2가지 구분 제출: 매해 등록과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41/2달 안에 제출. 연체수수료: 1일 당 $10. | **√** | 없음 | **√** | 등록 수수료 $50. 기금조성자문가/단체에 대한 요청 통지(서)는 매 계약마다 제출해야 함.  | **√** |
| **사우스 다코타 주**주법무장관(Attorney General) 주청사(State Capitol)주소: 1302 E. Hwy. 14, Ste. 3 Pierre, SD 57501605-773-4400) | 없음 | 없음 |  | 없음 |  | 없음 | **√** |
| **테네시 주**국무부(Department of State)자선요청(Charitable Solicitations)주소: 312 Rosa L. Parks Avenue 8th FloorWilliam R. Snodgrass Tower Nashville, TN 37243-0308 615-741-2555 | 매해 등록, 최초비용 $50. 이후 수수료는 연간 총 모금액에 따라 $80에서 $240 사이로 결정됨.  | 매해 등록과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총 수입이 $500,000를 초과하는 단체의 경우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단체 운영 첫 해에 등록한 새로운 등록자들의 경우, 재무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함. 연체수수료: 매달 $25. | **√** | 없음 | **√** | 등록수수료 $100. 기탁금 없음. | **√** |
| **텍사스 주**등록부서(Registrations Unit)주소: PO Box 13550 Austin, TX 78711-3550512-475-0775 | 공공안전단체와 재향군인단체는 매해 등록. 수수료: $150~$250사이. 재향군인단체는 기탁금이 요구됨. 외국자선단체는 텍사스에 실제 주소를 둔 경우 인가증명서(a Certificate of Authority)를 취득해야 함.  | 매해 갱신. |  | 주는 공공안전단체와 재향군인단체에 높은 수준의 공시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법령 참고.  |  | 없음 | **√** |
| **유타 주**상업부서(Dept. of Commerce) 소비자보호부(Division of Consumer Proection)주소: 160 East 300 South SM Box 146704 Salt Lake City, UT 84114-6704 801-530-6601 | 매해 등록, 등록수수료 $75 | 매해 갱신. 연간재정보고서나 Form990, 990EZ, 또는 990PF 제출이 등록 첫 해에 불가능한 경우, 최초 신청자는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연체수수료: 매달 $25.  | **√** | 없음 | **√** | 등록수수료 $250. 연체수수료: 매달 $25 | **√** |
| **버몬트 주**주법무장관(Attorney General)주소: 109 State Street Montpelier, VT 05609802-828-3171 | 없음 | 없음 |  | 없음 | **√** | 없음 | **√** |
| **버지니아 주**농업소비자서비스부서(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소비자분쟁실(Office of Consumer Affairs)주소: PO Box 526 Richmond, VA 23218 804-786-1343 | 매해 등록, 지난 해의 총 수입액에 따라 $30~$325사이의 수수료. 최초 등록은 반드시 $100의 추가비용 지불.  |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41/2개월 안에 매해 등록. 수익금이 $25,000 미만인 경우 공인재무전문가의 보고서 요구됨. 수익금이 $25,000이상인 경우 공인된 회계감사 또는 Form990을 수반할 것.  | **√** | 서면요청서에는 주(州)의 소비자분쟁부서(the State Division of Consumer Affairs)에서 이용 가능한 재무제표를 반드시 공시하여야 함. 버지니아 행정규칙(Virginia Administrative Rules) 참고.  | **√** | 등록수수료 $100. 기탁금 없음. | **√** |
| **워싱턴 주**주무장관실(Office of Secretary of State) 자선프로그램(Charity Program)주소: 801 Capitol Way South PO Box 40234 Olympia, WA 98504-0234360-725-0378 | 매해 등록, 최초 등록 수수료 $60, 이후 매년 $40.  |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11개월 안에 매해 등록. 연간 총 모금액(3년 이상기간 동안의 평균)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는 단체의 연간 정보 검색(annual information return)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등의 단계적인 재정 보고 의무사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 | 서면요청서에는 단체명, (후원, 모금)요청 목적, 단체의 등록여부, 주무장관의 수신자부담 전화번호(800-332-4483)를 포함해야 함. 영리목적 기금조성가(commercial fundraisers)는 이름과 회사명, 자선단체의 소속 시(City)명을 반드시 공시해야 함.  | **√** | 없음 | **√** |
| **웨스트버지니아 주**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주청사(State Capitol)주소: 1900 Kanawha Blvd. East Bldg. 1, Room 157-K Charleston, WV 25305 304-558-6000 | 매해 등록, 수수료: 연간 총 수익에 따라 $15~$50사이. | 매해 등록 시 감사 받은 회계 보고서와 Form 990 필요. 수익금이 $500,000를 초과할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audit) 필요. 수익금이 $200,000에서 $499,000 사이일 경우 재정 검토 (review) 필요. 연체수수료: 매달 $25. | **√** | 모든 서면으로 된 모금 요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은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과 재정 서류의 요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이 단체에 대한 주의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 등록, 수수료 $100와 기탁금 $10,000. 연체수수료: 매달 $25. | **√** |
| **위스콘신 주**금융 기관 위스콘신 지부(Wisconsin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주소: PO Box 7879 Madison, WI 53707-7879(608)267-1711 | 최초 등록, 수수료 $15 | 7월 31까지 매해 등록, 수수료는 $54. 연간 회계 보고서 기한: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12개월 이내. 수익금이 $500,000를 초과한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필요. 수익금이 $300,000를 초과한 경우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 필요. 연체금: 매달 $25. | **√** | 요청이 있을 시, 과년도의 자금, 부채, 자금잔액, 수입 및 비용을 밝히고 있는 (자선 단체명)의 재무제표가 제공된다. | **√** | 기부금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문기관인 경우 등록 요함, 최초 신청 수수료$50, 갱신 수수료 $107, 연체수수료 $25, 기탁금 $20,000. | **√** |
| **와이오밍 주**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주소: 2020 Carey Avenue, Suite 700 Cheyenne, WY 82002-0020 307-777-7311또는주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주소: Kendrick Building 2320 Capitol Avenue Cheyenne, WY 82002 307-777-7841 | 없음 | 없음 |  | 없음 |  | 없음 |  |

**법률적 지형: 주(州) 자선단체 규제기관 들여다보기**

(“The Legal Landscape: Focus on State Charity Regulators”)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State Charity Regulators)은 각 주 및 연방 법 집행/규제당국과 함께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비영리분야 감독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한다. 주 규제기관은 자선자산(charitable asset)의 집행자이자 보호자로서, 이 자산이 계획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그 밖에도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은 자선분야 및 시민기부자(donating public)에 대한 교육은 물론 흔히 입법과정에서도 역할을 한다.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은 자선기관 등록, 등록 준수 보장, 자선모금요청(charitable solicitation) 규제, 범죄활동 방지, 이사회 경영 모니터링, 신탁 집행(administration) 감독, 거래심사, 보전지역권 준수 보장 등, 많은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주 자선단체 담당 공무원의 권한은 주로 관습법(English common law)과 성문법 두 가지로부터 파생한다. 규제활동은 각 주에 따라 이 두 가지 모두 혹은 둘 중 하나의 사법원리(judicial principles)에 근거하고 있다.

**“각 주 자선담당사무국(state charity office)은 구조, 인력 패턴, 자선분야 감독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있어 각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각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 내 사무국은 관할구역에 따라 조직 및 직원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각 주 자선담당사무국(state charity office)은 구조, 인력 패턴, 자선분야 감독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있어 각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13개 주 법무장관 사무국은 자선단체 감독과 자선자산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구체적인 자선활동 “분과(division)”나 “부서(bureau)”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4개 주 법무장관 사무국은 소비자보호분과 안에 자선단체 감독업무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구역에 따라서 각 분과의 규모와 특성은 달라진다.

대부분 주에서 업무수행 및 주 차원 책임 이행을 위하여 아주 적은 인력만이 자선단체 감독을 전담하고 있다. 주 자선담당사무국 중 3분의 1 정도는 자선단체 감독업무 전담 전일종사 노동자(FTE)가 한 명 미만이며, 절반 이상의 사무국이 전일종사 노동자를 세 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조사관, 자선단체 감독 지원인력까지 아우른다. 이에 더해 별도의 자선단체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도 주 법무장관 사무국 대부분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자선단체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국 내 타 부서 변호사와 인력에 일상적으로 의존한다.

전체 주 절반 정도에서, 직접 혹은 기금조성가를 고용해 기부를 모집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감독책임은 주 법무장관이 독점한다. 일반적으로 주 법무장관에게는 주 관할권 내에서 자선목적으로 할당된 모든 자산과, 그러한 자산의 수탁자에 대한 규제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24개 관할구역(jurisdictions)에서는 주 법무장관과 함께 주 차원의 다른 한 사무국이 직간접적 공공모금캠페인에 대한 규제권한을 공유한다. 대부분의 경우 각 주의 자선모금에 관한 법령에 의해 주무장관 사무국이 그 권한을 부여 받는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집행권한은 일반적으로 신탁의무 위반, 자선자산 오용, 사기성 모금, 등록 및 또는 보고서 제출 불이행 등을 처리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한다. 불이행 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단체 접촉, 비공식적 수단 사용을 통한 해결 또는 합의서 체결 등은 가장 보통의 처리방법이다. 규제당국은 형식적인 불이행 통지를 보내거나 최종적으로는 단체의 등록을 철회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주 법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사무국은 벌금/처벌, 해산, 금지명령 구제, 반환, 이사회 구성원 축출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집행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주 자선담당사무국은 합동조사나 법정행위 참여, 또는 적용가능법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타 기관에의 사안의뢰 등을 통해 다른 주정부나 법 집행기관(국세청, 우정국, 지역 법 집행당국, 이외 주 안팎의 다른 기관)과 협력한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집행권한은 일반적으로 신탁의무 위반, 자선자산 오용, 사기성 모금, 등록 및 또는 보고서 제출 불이행 등을 처리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한다.”**

많은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이 시민교육(education of the public)을 그들이 지는 공적 의무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 주 자선담당사무국은 당국 스스로 또는 비영리분야 내 단체와의 파트너십 내에서 교육관련 지원(educational outreach)을 촉진할 수 있다. 각 주의 비영리단체와 각 주 변호사협회는 주 자선담당사무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한, 많은 사무국이 비영리분야 대표자문단, 공공자선기관 또는 재단의 산하기관, 회계사협회, 그리고 자선기관에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여타 학교 및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는다.

주 자선 당국의 형태, 주 차원의 감독권한, 영역 내 규제준수 집행 및 촉진을 위하여 주 자선당국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는, Cindy M. Lott 외 5명, **<자선분야 내 주 차원 규제 및 집행>**를 보라.

**용어해설 및 알림 (Glossary and Notes)**

**등록 및 허가 (Registration and Licensing)**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선단체와 모금전문가들에게 모금활동 전에 규제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1988년, 1988년 라일리 v. 전미시각장애인협회 사건(Riley v.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of North Carolina)에서 미국 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허가조항(licensing provisions)이 위헌이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주에서 법령을 수정하였다. 현재 총 41개 주에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진행하는 자선단체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수는 추가적으로 새 법률을 만드는 주가 생김에 따라 변할 수 있음.) 또한, 몇몇 작은 관할구역(시나 자치주)에서도 등록 조례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주에서는 자선모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반사기행위법을 정하고 있다.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개별 관할구역과 상의할 것.

**보고기한(Reporting Dates)**

자선단체들이 규제기관에 재정보고서 및 연간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한.

**상업성 합작(Commercial Coventures)**

일부 주들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연계하여 자신의 이름과 선의를 이용하는 것에 합의하는 자선기관과 영리 목적 기업의 관계 및 그에 따른 활동을 규제한다. 이러한 상업성 합작관계는 몇몇 계약상 조항을 요구하며,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는 등록 역시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활동의 규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의 법령을 참조할 것.

**1후원(모금)요청 시 공시의무(Solicitation Disclosure Requirements)**

공시(Disclosures)란, 모금요청 시 잠재적 기부자(prospective contributor)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들이다. 많은 주에서, 직접 모금하거나 외부의 모금회사에 모금을 외주하는 자선단체에 대하여 구두와 서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통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방문모금원이나 텔레마케팅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 공시(의무)는 관할구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단체는 규정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주의 법령 및 의무사항, 법률자문을 참고해야 한다. 각 주에서 의무(공시)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그것이 대법원의 판례들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위헌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2기금조성 자문가/기관 (Fundraising Counsel)**

자선후원요청모델법에 따르면 기금조성 자문가는 자선단체들이 그들의 모금 요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언과 충고를 해주나 실제로 청원을 하거나 기부금에 대한 관리권을 보유하지는 않는 기관 혹은 사람을 말한다. 기금조성 자문가는 잠재기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또한 기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들이 이들에게는 기탁금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하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기금조성 자문가의 연례 등록, 연도별 수수료, 기탁 의무 등의 요구사항들을 기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단체들은 현재 요건들을 의무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개별 주 현 법령이나 의무 사항, 법률자문을 참고해야 한다.

**3유급 후원요청가(Paid Solicitors)**

많은 주에서 기금모금활동 전문가(돈을 받고 단체를 위해 실제적으로 기부를 요청하거나 모금 활동을 하는 개인 혹은 기업)들은 반드시 주에 등록하고 기탁금을 내야만 한다. 단체들은 구체적인 의무사항에 대해 주 법령들과 요구사항들을 확인하거나 법률자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4통합등록신고서(Unified Registration Statement)**

이 양식은 자선단체들의 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 제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형식은 Giving Institute. 모금전문인협회(AFP), 전국주자선담당공무원 협회(NASCO)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다음 주들은 통합등록신고서 외에도 추가적인 양식 혹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다: 아칸소,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메인, 미시건, 미시시피, 미주리,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유타, 워싱턴,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메사추세츠는 최초등록에 한해서만 통합등록신고서를 받고 있다.

**온라인 모금 활동(Internet Fundraising Activities)**

현재 등록조항은 사실상 온라인모금을 포함하고 이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소 접점minimum contact)과 전통적인 형태의 모금 이외의 경우 이 법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는 주 차원 온라인 활동 규제에 관한 여러 이슈를 제기시켰다. 전국법무장관협회와 전국 주 자선담당공무원협회는 자선단체와 그들의 모금자문이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주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찰스턴 원칙 (Charleston Principles)”이라는 것을 개발했다. 이 원칙은 주에게 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고 법률이 바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특정 주에 위치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기부를 요청하는 자선단체와 모금자문단은 그 주에 등록해야만 할 것이며, 요청을 보내는 다른 주에도 등록해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기부가 들어오는 주에도 등록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nasconet.org](http://www.nasconet.org).를 방문하라.

**주와 연방의 “두낫콜 (Do Not Call)” 법**

상당한 수 주에서 비영리단체나 그들이 고용한 텔레마케터가 주 차원 모금요청전화 차단에 등록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연방무역위원회에서는 텔레마케팅 판매규칙을 개정하여 비영리단체나 회사들에게서 후원요청전화를 더 이상 받기 싫다고 표현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별 구체적인 전화금지명단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어느 관할구역에서든 구체적으로 전화를 통한 후원/모금요청을 하기 전에 법률자문가와 상의하라.

**강조사항**

이 정보는 자선단체와 그들이 고용한 모금자문단의 등록 의무사항에 관한 소개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자료는 모금 및 관련 활동 참여에 앞서 단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 모금 법률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이 표와 부수되는 용어해설, 전달사항에 있는 정보는 주기적으로 수정되고 재검토될 수 있다. 단체에서는 구체적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법률자문가와 상의할 것.